

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가단5174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유한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원제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김명환, 송영욱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8. 1. 30.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8. 1. 30.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 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32,988,527원, 원고 B에게 2,905,01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채무초과상태인 2018. 1. 30. 피고와, D이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특허청 2018. 1. 30. 접수 E로 피고 명의의 이전 등록을 마쳐주었다. 결국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D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채권자취소권에 기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7. 12. 31. 기준 별지 '표준대차대조표' 기재와 같이 자산 총계가 2,695,806,858원, 부채 총계가 2,427,359,618원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2017. 12. 31. 당시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나아가 위 '표준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한 D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3,359,700원임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위 표준대차대조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직후 D의 채권자들이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 청구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점이나, D이 이 사건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밝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매출이 거의 없고, 영업이익도 전무하다."는 취지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종민

별지 목록

1. 가. 특허등록번호 : 나. 출원연월일 : 다. 출원번호 : 라. 공고연월일 :

마. 특허결정연월일 : 2015. 7. 31.

바. 유별 : E02D 5/34, E02D 5/40, E02D 27/52

사. 발명의 명칭 :

아. 청구범위의 항수 : 6

자.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35. 4. 28.

차. 등록권리자 2. 가. 특허등록번호 : 나. 출원연월일 : 다. 출원번호 : 라. 공고연월일 :

마. 특허결정연월일 : 2016. 9. 29.

바. 유별 : E02D 9/00, E02D 9/02, E02D 13/06, E02D 5/38

사. 발명의 명칭 :

아. 청구범위의 항수 : 2

자.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36. 4. 27.

차. 등록권리자

3. 가. 특허등록번호 :

나. 출원연월일 :

다. 출원번호 :

라. 공고연월일 :

마. 특허결정연월일 : 2017. 2. 16.

바. 유별 : E02D 5/34, E02D 5/38, E02D 7/20, E02D 9/02, E02D 27/28, E02D 31/02

사. 발명의 명칭 :

아. 청구범위의 항수 : 1

자.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35. 9. 11.

차. 등록권리자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2017년 12월 31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I. 유동자산	001	2,196,269,019	1. 대일채무	230	33,629,840
(1) 당좌자산	002	2,191,218,765	가. 피상해입금	231	33,629,840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3	37,694,584	2. 단기차입금	234	250,000,000
2. 단기예금	004	2,000,000	다. 기타단기차입금	237	250,000,000
4. 매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009	173,169,610	3. 미지급금	238	1,529,802,149
나. 받을어음	012	173,169,610	가. 미지급법인세	239	6,602,990
5. 단기대여금	024	5,000,000	다. 기타미지급금	241	1,823,199,159
나. 주주·임원·직원	027	5,000,000	4. 선수금	243	130,000,000
6. 미수금	031	1,964,454,971	나. 공사선수금	244	130,000,000
나. 공사미수금	034	1,964,000,001	5. 예수금	246	83,727,629
다. 기타미수금	035	394,970	가. 부가가치세예수금	247	48,468,139
선급금외	039	8,899,600	라. 기타예수금	250	35,259,490
(2) 재고자산	044	0	II. 비유동부채	284	0
(3) 기타금융자산	067	5,050,254	부채총계(I+II)	333	2,427,359,618
1. 미수수익	068	593,589	III. 자본금	334	200,000,000
2. 선급비용	069	4,456,665	1. 보통주자본금	335	200,000,000
II. 비유동자산	080	499,537,839	IV. 자본잉여금	337	0
(1) 투자자산	081	86,757,024	V. 자본조정	348	0
2. 장기투자증권	083	86,757,024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0
가. 예도가능증권	084	86,757,024	VII. 이익잉여금	373	65,447,240
(2) 유형자산	110	309,001,115	5. 매서분이익잉여금(매지회결손금)	381	65,447,240
6. 건설중장비	130	348,860,000	자본총계(III+VII)	362	265,447,240
7. 차량운반구	134	14,205,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2,595,806,858
(감가상각누계액)	135	710,250			
9. 시설장비	141	1,400,000			
비용	149	5,246,365			
(3) 무형자산	169	3,359,700			
2. 산업재산권	171	3,359,700			
가. 특허권	172	3,359,700			
(4) 기타비유동자산	194	40,430,000			
4. 보증금	217	40,430,000			
가. 임차보증금	218	40,000,000			
나. 기타보증금	220	430,000			
자산총계(I+II)	228	2,625,806,858			
I. 유동부채	229	2,427,359,618			